



당국은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처하여 축산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축산업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취 축산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후진성과 영세성을 탈피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축산업자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을 얻고 석량자원의 최일선의 일꾼으로서의 보람으로 축산업에 종사해왔으나, 금번 재무부의 3년 100% 면세와, 2년 50% 과세는 성장하는 축산업의 맥을 찌르는 결과로서 이러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여기에 축산업계 각 생산자 단체의 건의문을 게재하여 부당함을 밝히고자한다.

— 편집자 주. —

維新果業遂行과 아울러 農漁村의 經濟發展을 爲하여 주력하시는 勞苦에 對하여 深甚한 致賀를 드리오며 더욱이 畜産振興에 對하여 特別한 심려를 베푸셔서 括目할만한 發展을 이룩한데 對하여 衷心으로 謝意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諒察하시는 바와같이 畜産業界는 아직도 요람기에 있어서 自立하기까지에는 遼遠한 形便에 있오나 今般 稅制改革에 있어서 業界實情에 符合되지 않은 不合理한 點이 있음으로 모처럼 發展途上에 있는 畜産業界의 安定基般이 크게 뒤 흔들리게 될 處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畜産業界 一同이 再三 熟議한 끝에 다음 事項을 建議드리오니 國家 百年大計를 爲한 높은 次元에서 畜産業界의 支援育成을 爲하여 特別하신 配慮가 있으시기를 傾願하는 바입니다.

다 음

畜産은 廣義의 食糧으로써 國民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其 需要가 急增하고 있음으로 政府에서는 食糧圈의 擴大造成과 農加所得의 向上을 爲하여 劃期的인 施策을 樹立하고 畜産振興을 促進하여 왔으며 特히 1969년부터는 畜産業에 對한 所得稅와 法人稅(以下“所得稅”라 略稱합니다)의 減免을 爲하여 稅制上의 特別措置를 하여 오늘날과 같이 畜産業의 發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政府에서 提案하신 畜産業에 對한 所得稅減免措置를 보면

(1) 1976年 12月 31日, 現在의 畜産業者는 從前 法令의 適用을 받아 1976. 1. 1부터 1978年 12月 31日까지 所得稅를 50%만 減免받게 되고

(2) 1977. 1. 1부터 新規로 開始하는 畜産業者는 事業開始年度와 3年은 100% 其後 2

年은 50%를 減免받도록 되었아온바

(3) 이는 아직까지 政府의 特別한 施策으로 發展의 基般을 造成하고 있는 畜產業界의 後退를 招來하는 一大危脅이 아닐수 없습니다.

1. 問題點으로서는

① 減免期間이 너무 短期間이어서 實質的인 惠澤이 적어 畜產業에 對한 投資誘致가 어렵습니다.

② 既存 畜產業者에게 1976. 1. 1부터 所得稅의 50%를 課稅하게 되면 事業規模를 주리거나 轉業하게 되어 畜產業이 萎縮됩니다.

2. 建議드릴것은

畜產業의 安定基般이 造成될때까지 畜產業 所得稅의 減免을 다음과 같이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新規畜產業者에 對한 減免
事業開始한 年度와 7年間 100% 減免과 其後 3年間 50% 減免

② 既存畜產業者에 對한 減免期間延長
既存畜產業者는 1976. 1. 1부터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前項과 같이 減免

3. 이에 對한 事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 畜產業의 特殊性

(1) 畜產業의 零細性과 後進性

現段階에 있어서는 아직도 韓國의 畜產業은 生産基般이 確立되어 있지 않은 幼稚한 段階로서 零細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으며 經營規模나 構造 및 技術面에서 後進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表1 參照>

(2) 畜產業의 基盤造成의 長期性과 收益性 稀薄

畜產業은 基盤造成 期間이 長期間이고 많은 投資額이 所要되며 資金의 懷妊期間이 길고 (約 7年間) 收益性이 稀薄한 業種입니다.

例를 들면 牛의 경우 基盤造成 24개월 成畜

到達 24個月 妊娠 9.5個月 成畜 20個月 計 77.5個月이 所要됩니다<表2 參照>.

(3) 畜產業은 不安定한 業種

他產業은 資本의 回轉期間이 빠르고 需給을 適切히 調節하며 收益을 保障할 수 있으나 畜產業은 自然條件의 依存度가 높으며 生命力이 있는 動物이기 때문에 恒常 不安한 狀態이며 生産原價에 對한 保障制度가 없고 流通 構造가 確立되지 않았으며 需要와 供給이 不規則的이어서 損益을 豫測하기 어려운 不安定한 業種입니다.

※ 例를 들면 69년부터 免稅措置를 받아 發展 途上에 있었으나 意外的 世界的인 油類波動과 飼料價格의 仰騰과 景氣의 沈滯 등으로 畜產業의 一大打擊을 받아 倒産한 業者가 많았습니다.

(4) 畜産物의 需要의 急增

畜産物은 國民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穀類의 需要는 減少되고 反面 畜産物의 需要는 急增하고 있으며 81년에는 75년에 比하여 一般 肉類需要量이 201%, 牛乳需要量이 313%, 鷄卵需要量이 218%로 增加할 展望이나 供給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表 3,4,5 參照>.

가까운 例로써 今年 봄의 肉類波動으로 因하여 牛肉 2,000%의 輸入을 計劃하여 于先 1,000%이 輸入되었으므로 이로 因하여 貴重한 外貨가 約 \$900,000(원貨約 436,500千원)이 消費되었습니다.

(5) 肉牛 資源의 減少

最近 農機械 普及에 따른 農耕牛 飼育頭數의 減少에 따라 肉類의 供給 基本頭數 確保를 爲한 畜産의 企業化가 時急히 要請됩니다.

(6) 畜産物 價格의 社會的 保障策 未備

① 쌀, 보리 등의 境遇는 莫大한 政府財政支 援外에 生産費를 上廻하는 價格으로 政府가 買上하고 있는 反面

② 畜産物은 生産費에 依한 價格保障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間接的인 統制價格으로 抑制되고 있습니다. 또한

③ 一般 工產品은 生産者가 販賣價格을 調整하는데 畜産物은 生産價格을 度外視한 價格으로 消費市場에서 任意로 調整하며 또한 家

畜은 生物이기 때문에 生産費가 안되더라도 더 飼育하면 飼育管理費가 加重되어 더욱 損失을 가져오기 때문에 損害를 보아가면서 放牧하는 事例가 許多하다. 例를 들면 1973년과 74년의 養豚 不況으로 1974年 6月末의 979,809戶이 었던 養豚 農家가 1974年末에는 889,553戶가 되어 90,256戶가 減退되었읍니다.

◎ 現在 提案中인 法案대로 施行될 경우

(1) 畜産業의 萎縮과 畜産物 需給上 重大한 蹉跌 招來

① 減免措置를 3年間 100%, 2年間 50%로 할 경우에는 減免期間이 짧으므로 減免에 對한 惠澤이 別로 없어서 資本投資에 對한 收益을 保障받을수가 없으므로 畜産業에 對한 投資誘致가 大端히 어려울 것이며

② 特히 既存 畜産業者가 차지하는 飼育頭數의 比率이 全體頭數에 對하여 乳牛 77%, 養豚 25%, 養鷄 70%인바<表 7 參照>

76年 1月부터 所得의 50%를 課稅하게 되면 大部分이 飼育規模를 줄이거나 또는 轉業하는 事態가 續出하여 畜産物供給量이 大幅 줄어들것기 明若觀火한 반면 新規畜産業者는 施設期間 生産期間 等に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됨으로 急增하는 畜産物 需要를 到底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③ 畜産物 需給에 重大한 蹉蹉을 招來하게 됩니다.

(2) 畜産業企業化의 後退와 萎縮

急增하는 肉類需要에 對處하기 爲하여는 外國의 先例와 같이 畜産業의 企業化가 緊急히 要請되는 바이며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綜合 所得稅의 減免惠澤을 주어 大單位 企業 牧場

을 支援 造成하고 있으며 4次 5個年 計劃에도 畜産의 企業化施策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今般 畜産業의 稅制措置로 大規模 業者는 規模를 縮少함으로 畜産業을 少規模 乃至 副業化로 後退시켜서 畜産의 發展은 고사하고 오히려 萎縮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됩니다.

(3) 畜産物 輸出의 不能과 肉類輸入의 不加避

畜産業이 萎縮됨에 따라 畜産物의 供給이 減少되어 年間 \$25,000,000씩 輸出하는 畜産物에 依한 外貨獲得은 不可能하게 되고 反面 肉類輸入이 不可避하여 畜産物 需要量의 10%만 減少하여도 年間 33,651%에 해당하는 \$115,619,000(원貨 55,497百萬圓)의 外貨가 消費됩니다<表 9.10 參照>.

◎ 外國의 畜産施策

先進外國에서는 畜産施策을 다음과 같이 講究하고 있습니다.

- ① 開發費의 國庫補助(30%~50%)
- ② 長期低利融資(5年~27年)
- ③ 畜産物의 價格保障과 政府買上
- ④ 租稅減免
- ⑤ 其他支援

參 考 表

<表 1> 戶當 平均家畜飼育規模

區 分		1968	1974
韓	牛	1.2頭	1.2頭
乳	牛	6.4 "	9.1 "
	豚	1.4 "	1.9 "
	鷄	20.6首	19.1首

<表 2> 畜 産 業 資 本 投 資 懷 妊 期 間

區 分	基盤造成 (A)	成畜到達 (B)	妊娠期間 (C)	生 産 畜 販 買			計 (A+B+C+D)
				仔 畜	育 成 畜	成 畜 (D)	
韓 牛	24 月	24 月	9.5 月	6 月	14 月	20 月	77.5 月
乳 牛	24	24	9.5	6	14	20	77.5
豚	12	12	4.0	2	8	10	38.0
鷄	12	6	21日	2	4	6	24.5

〈表 11 參照〉

이와 같이 畜産業은 一般畜産業과는 特異性을 갖인 産業으로 畜産業에 對한 課稅問題는

稅收增大面에만 置重하여 다룰 問題가 아니라 食糧增産과 國民保健面의 높은 政策的인 次元에서 畜産業의 基般이 造成될때까지 支援育成하여 주실것을 再三 建議드리는 바입니다.

〈表 3〉 各國 1人當 畜産物 消費 對比

區 分	牛 肉	豚 肉	鷄 肉	合 計
韓 國	1.5kg	2.7kg	1.6kg	5.8kg
日 本	3.3	9.0	6.6	18.9
美 國	49.4	29.6	31.5	110.5
英 國	16.3	17.4	10.5	44.2
比 律 賓	2.8	8.2	2.2	13.2
泰 國	3.7	4.9	2.4	11.0
이 스 라 엘	6.6	1.6	38.5	46.7
불 란 서	27.0	21.7	16.4	65.1
伊 太 利	19.3	12.5	12.0	43.8
香 港	8.2	32.1	3.0	43.3

〈表 4〉 畜産物 需要 增加 趨勢

年 度	1人當 GNP	肉類 消費 增加
1960	94弗	3.6kg
1974	513弗	5.9"
1981	1,200弗	12.7"

〈表 5-1〉 畜産物 食糧 代替 效果 推定

區 分	1973	1981	81 / 73
肉類 生産	203,900%	449,900%	221%
鷄 卵 生産	162,600"	357,400"	220%
牛 乳 生産	107,900"	490,700"	455%
計	474,400"	1,298,800"	274%
蛋白質 換算	64,600"	151,100"	234%
쌀 로 換算	839,000"	1,962,000"	234%
	(5,826,000石)	(13,625,000石)	

〈表 5-2〉 穀類 와 畜産物 의 消費 對比

※ 1인당연간소비 : 단위 = kg

區 分	71	72	73	74	75	
穀 類	GNP (\$)	275	304	376	483	531
	穀 物	245.2	233.9	229.3	226.2	221.2
	쌀	141.6	126.8	123.0	131.0	120.2
	보 리 쌀	52.3	55.3	55.9	54.1	54.8
畜産物	밀 가 루	32.0	4.9	34.5	26.5	29.7
	肉 類	5.2	5.7	5.7	5.8	6.2
	牛 乳	1.8	2.5	3.2	3.6	4.4

註: 畜産物의 消費增加로 穀類의 消費가 減少됨.

〈表 6〉 副 業 的 限 界

재 무 부

직제 1234- 1976. 2. 5

수신 국세청장

제목 농가의 부업적인 축산소득에 대한 면세

1. 축산업에 대하여는 작년말로서 소득세의 전액면세기간이 종료되고 금년부터 50%만 감면하게 되어 있으나

2. 조세감면규제법 제 2 조 제 1 항 제 17 호 및 지방세법 제 234 조에 의하여 농가의 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5인 가족 기준 연간소득(76년) 66만원이하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3. 농가의 부업으로 하는 다음 규모의 축산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부와 협의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축 별	규 모	비 고
젖 소	7마리	새끼포함
소	10 "	"
돼 지	50 "	"
산 양	100 "	"
면 양	100 "	"
토 끼	500 "	"
닭	500 "	병아리 제외

끝

재 무 부 장 관

〈表 7〉

規 模 別 家 畜 飼 育 狀 況

(1975年末)

畜 種	區 分	戶 數	比 率	頭 數	比 率
韓 牛	10두 이하	1,273,958	99.94%	1,519,659	98.31%
	11두 이상	722	0.06	26,173	1.69
	계	1,274,680	100	1,545,832	100
肉 牛	10두 이하	1,983	96.50	3,083	30.90
	11두 이상	72	3.50	6,896	69.10
	계	2,055	100	9,979	100
乳 牛	7두 이하	6,173	65.57	19,671	23
	8두 이상	3,242	34.43	65,871	77
	계	9,415	100	85,542	100
豚	50두 이하	652,860	99.79	942,054	75.53
	51두 이상	1,397	0.21	305,127	24.47
	계	654,257	100	1,247,181	100
鷄	500수 이하	1,089,552	99.55	6,294,657	30
	501수 이상	4,912	0.45	14,644,075	70
	계	1,094,464	100	20,938,732	100

〈表 8〉

年 度 別 家 畜 飼 育 類 數

區 分	韓 牛	肉 牛	乳 牛	豚	鷄
6 6	1,289,695	1,139	8,471	1,457,309	14,007,723
6 7	1,242,648	2,132	10,360	1,296,109	17,079,169
6 8	1,193,457	3,301	13,760	1,395,685	25,967,810
6 9	1,202,335	3,948	18,820	1,338,497	22,651,393
7 0	1,270,823	3,023	22,827	1,121,413	23,476,863
7 1	1,247,061	2,865	30,009	1,332,513	25,903,054

7 2	1,333,353	4,868	36,128	1,247,637	24,537,353
7 3	1,486,188	6,964	52,424	1,594,718	23,070,981
7 4	1,777,711	7,449	73,195	1,818,338	18,814,204
7 5	1,545,832	9,979	85,542	1,247,181	20,938,732

〈表 9〉 畜 產 物 輸 出 狀 況

區 分 品 目	國 內 產 輸 出		保 稅 加 工 輸 出		合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肉 類	8,174 [%]	22,012 ^{千弗}	10,976 [%]	6,438 ^{千弗}	19,138 [%]	28,450 ^{千弗}
(豚 肉)	(8,108)	(21,855)	(323)	(771)	(8,431)	(22,626)
(緬 羊 肉)	—	—	(10,548)	(5,194)	(10,548)	(5,194)
(牛 內 腸)	—	—	(72)	(387)	(72)	(387)
(雞 肉)	(60)	(141)	—	—	(60)	(141)
(羊 內 腸)	—	—	(21)	(86)	(21)	(86)
(馬 肉)	(6)	(16)	—	—	(6)	(16)
獸 毛 類	93	743	68	1,287	161	2,030
獸 皮 類	22	54	—	—	22	54
獸 骨	76	11	—	—	76	11
雞 卵	15,012千個	879	—	—	15,012	879
其 他 畜 產 物	430	212	—	—	430	212
韓 牛	2,072頭	947	—	—	2,072	947
馬	262"	63	—	—	262	63
鳥 類	82,736首	58	—	—	82,736	58
其 他 動 物	98,000	111	—	—	98,000	111
計		25,090		7,725		32,815

〈表 10〉 肉 類 輸 入 推 定

區 分	1 9 7 4 生 產	1 9 8 1 生 產	10% 減算時(81)	外 貨 換 算
牛 肉	51,506 [%]	96,969 [%]	9,697 [%]	63,515 ^{千弗} (%6,550弗)
豚 肉	95,353	150,453	15,045	42,126 ^{千弗} (2,880弗)
雞 肉	53,269	89,095	8,909	9,978 ^{千弗} (1,120弗)
計	200,128	335,517	33,651	115,619 ^{千弗} (55,497百萬圓)

〈表 11〉 外國의 畜產振興施策

가. 一段階施策(基盤造成段階)

- 開發費의 國家補助 50%~30%
- 低利資金의 融資 5年~27年
- 技術支援과 租稅의 減免

適用國: 西獨, 丁抹, 뉴질랜드, 호주, 伊太利, 瑞
西, 英國, 美國, 불란서, 日本等

나. 二段階 施策

安定的 畜產經營을 위하여

○ 生産調節施策

○ 價格調節 및 保障施策

- (1) 保險制度(英國, 美國, 丁抹)
- (2) 上, 下限線 設定으로 政府買上制度(英國, 美國, 伊太利)
- (3) 不足價格 支拂制
- (4) 不足時 低利資金貸與
- (5) 基金積立制度確立(日本, 美國, 丁抹)

○ 山地牧場 離農防止를 위한 補償制度

(스위스, 1頭飼育時年 160Fr 補償)

- 價格支持制度: 最高, 最低價格制와 買上備畜制實施(丁抹, 西獨, 日本)
- 價格保證制度: 目標價格의 指示豫示價格 實行
- 國際貿易 規制로 輸出入 制限 및 단력 關稅制 採擇으로 自國內 養畜保護(프랑스, 英國, 美國 日本)

<表 12> 牧場開發實例

- 國內 牧場開發의 例를 經濟研究에서 經營分析한 內容
 - 1969年 3日 開發着手→分析: 1973年9月애 分析
 - 總土地 2, 153ha을 開發如作
 - 4年 6個月間 總投資額 683, 105千원(100%)
 - 固定投資 507, 235 " (74.2%)
 - 運 營 費 175, 870 " (25.8%)
 - 當時開發現況
 - 草 地 1, 116ha
 - 牧 道 開 發 80km
 - 畜 舍 2, 138坪(21棟) 約 2, 000頭收容

Silo 15基(2, 340%)
 飼料製造工場 1個所
 韓 牛 1, 824頭
 總動員人員 347, 400名

- 開發完了後 目標 韓 牛 5, 000頭
 草 地 1, 456ha
 年間販賣 2, 160頭

○ 經濟分析上 財務指標

運營資金回轉	80年以後(13年次부터)
年間費用回收	" (")
借入金元利金償還可能	" (")
短期經營安定	83 " (15 ")
長期經營安定	86 " (18 ")

※ 短期經營安定→當該年度의 事業收益率이 9% 超過時

※ 長期經營安定→總投資에 對한 收益率이 9% 따라서 牧場開發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며 基盤造成投資에 比하여 投資收益率이 낮으며 長期間 所要되기 때문에 課稅期間을 延長要請하고 있는 것임.

<表 13> 畜產業所得稅課稅推定

區 分	頭當 平均 所得	所得稅 推 定	50% 該當額	備 考	
				頭當 平均 純益	
韓牛·肉牛	4, 963원	3, 192, 545원	1, 596, 272원	△	17, 713원
乳 牛	119, 160	901, 565, 883	450, 782, 941		4
養 豚	2, 072	43, 352, 935	21, 676, 467	△	1, 170
養 鷄	232	319, 812, 681	159, 906, 340	△	67
計		1, 267, 924, 044	633, 962, 020		

註: 純益은 所得金額에서 自家勞賃, 自己資本利子, 其他 自給費用等을 控除한 金額임.

<表 14>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案對比(畜產業 法人稅·所得稅)

現 行	改 正 案
法人稅法, 所得稅法에서 稅額減免 1. 1969年~1975年 100% 2. 1976年~1978年 50% ※ 1976年 12月 31日 現在이 畜產業者는 現行法令대로 適用 ○ 基準=事業開始年度 ○ 根據法 1. 所得稅稅法 第6條 2. 法人稅法 第24條의 2	租稅減免規制法에서 重要產業으로 減免 1. 事業開始年度와 其後 3年 100% 2. 其後 2年 50% ※(1) 1977年 1月 1日 以後 新規로 開始한 者부터 適用 (2) 事業開始年度라 함은 所得 發生 開始年度를 말함. (完成品의 製造開始年度) ○ 基準=所得發生年度 ○ 根據法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의 8(重要產業에 대한 租稅 特例適用)